

제28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2. 3. 22.(화)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기존 개정으로 인한 삭제된 조항 및 장 등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 제고
- 선생의 인문사상을 널리 알리며, 문화제 인지도 제고 위한 홍보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가. 기존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장,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및 문구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 (안 제1조 ~ 제15조, 제17조)
- 나. 정약용문화제의 홍보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6조)
 - 안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 제작·배부
 - 정약용 선생 이미지 홍보 위한 기념품 판매소 위탁 설치·운영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정약용과
- 라. 입법예고 : 2022. 1. 27. ~ 2. 16.(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약용 선생의 애민사상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약용문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구조 체계는 5장과 17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위탁 및 경비의 지원까지는 현행 조례의 전개 배열 순서와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켰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비탄력적인 요소인 당연직 위원인 행정기구 직위의 명칭(행정기획실장, 문화교육국장)을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제5장에 제16조에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문화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물품의 배포와 기념품 판매소를 위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홍보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각 장 및 조항 순서 정비, 용어 정비 등으로 개정 후에도 현저하게 추가되는 예산 재정 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매년 세출, 세입 예산에 대한 현저하게 추가되는 예산 증감사항은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정약용과장 문명우

(현행 조례)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제정) 2009.03.26 조례 제0810호
(일부개정) 2014.09.22 조례 제1192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326호
(일부개정) 2017.0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12.26 조례 제1510호
(일부개정) 2018.10.11 조례 제1573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04.11 조례 제1623호
(일부개정) 2019.10.10 조례 제1678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12.26 조례 제17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과 학문적 사상을 기리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제2조(행사시기 및 장소) 정약용문화제는 매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재 정약용 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기와 장소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3조(행사 내용) 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 보존과 관련한 기획·전시·공연·체험 등 행사와 정약용대상 시상 및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 <개정 2019. 4. 11.>

제2장 삭제 <2019. 12. 26.>**제3장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 <개정 2019. 4. 11.>**

제10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4. 11., 2019. 12. 26.>

1. 정약용문화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약용문화제의 시기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약용문화제의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약용문화제 시상 및 수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약용문화제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획실장과 문화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약용문화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언론계·문화계 등의 전문가, 주민·직능단체 대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9.22, 2017.1.25., 2019. 4. 11., 2019.10.1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4. 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약용문화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26., 2018.10.11., 2019. 4. 11.>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6조

삭제 <2019. 4. 11.>

제17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4장 시상 및 수상자의 결정 <개정 2019. 12. 26.>

제18조(시상) 시장은 정약용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이나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상장 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6.]

[중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 12. 26.>]

제19조(시상부문 및 수상인원) 제18조에 따른 시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상부문 및 수상인원 결정에 대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6.]

[중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 12. 26.>]

제20조(심사 및 결정) 제18조에 따른 수상자는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상자의 결정에 대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6.]

[중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 12. 26.>]

제5장 보칙 <신설 2019. 12. 26.>

제21조(위탁) 시장은 정약용문화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약용문화제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해당 연도에 한한다. <개정 2019. 4. 11.>

[제18조에서 이동 <2019. 12. 26.>]

제22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정약용문화제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19. 12. 26.>

[제19조에서 이동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1.>

[제20조에서 이동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4.09.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
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

부칙<개정 2015.12.31. 조례 제1326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
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을 “행정안전실장” 으로 한다.

<28>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2017.12.26., 조례 제1510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
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문화관광과장” 을 “문화예술과장” 으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
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문화예술과장” 을 “문화유산과장” 으로 한다.

⑧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23호,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8호, 2019. 10. 10.>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
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실장” 을 “행정기획실장” 으로 한다.

<22> 생략

부 칙 <조례 제1707호,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